

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

의 안 번 호	179
--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5. 09. 12.
제 출 자 : 이만재의원외 6인

1. 주 문

- 가.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- 나. 심사기간은 2005년 09월 20일, 1일간으로 한다.

2. 제안이유

- 가.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관계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.

3. 참고사항 : 없 음

심사계획

1. 활동목적

- 심도있는 심사로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
- 신속한 의사진행

2. 심사안건

-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
- 평창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
- 평창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
- 2014평창동계올림픽평창군추진위원회지원육성조례안
- 평창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피및운영조례일부개정안

3. 활동기간

- 2005년 9월 20일, 1일간으로 한다.

4. 구성

- 이만재의원, 차재천의원, 고응종의원, 신교선의원, 심재국의원
우강호의원, 김영해의원

5. 운영 계획

일 시	차 수	내 용	비 고
09.20(수)	제1차 조례특위 (13:30)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2.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3.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4. 평창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 조례안5. 평창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6. 2014평창동계올림픽평창군추진위원회 지원육성조례안7. 평창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피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	